

2022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(정정)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4일
국토교통부장관

1.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

가. 공시(가격) 기준일: 2022년 1월 1일

나. 대상 공동주택수: 이의신청 조정 25호, 연관세대 정정 565호

다. 공시사항: 공동주택의 소재지, 명칭, 동·호수, 면적, 가격(내용 생략,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)

라. 열람장소: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

2.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

가.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6월 24일부터 2022년 7월 25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.

나. 이의신청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·군·구 민원실에 비치)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(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)에게 제출하여야 함.